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September 15,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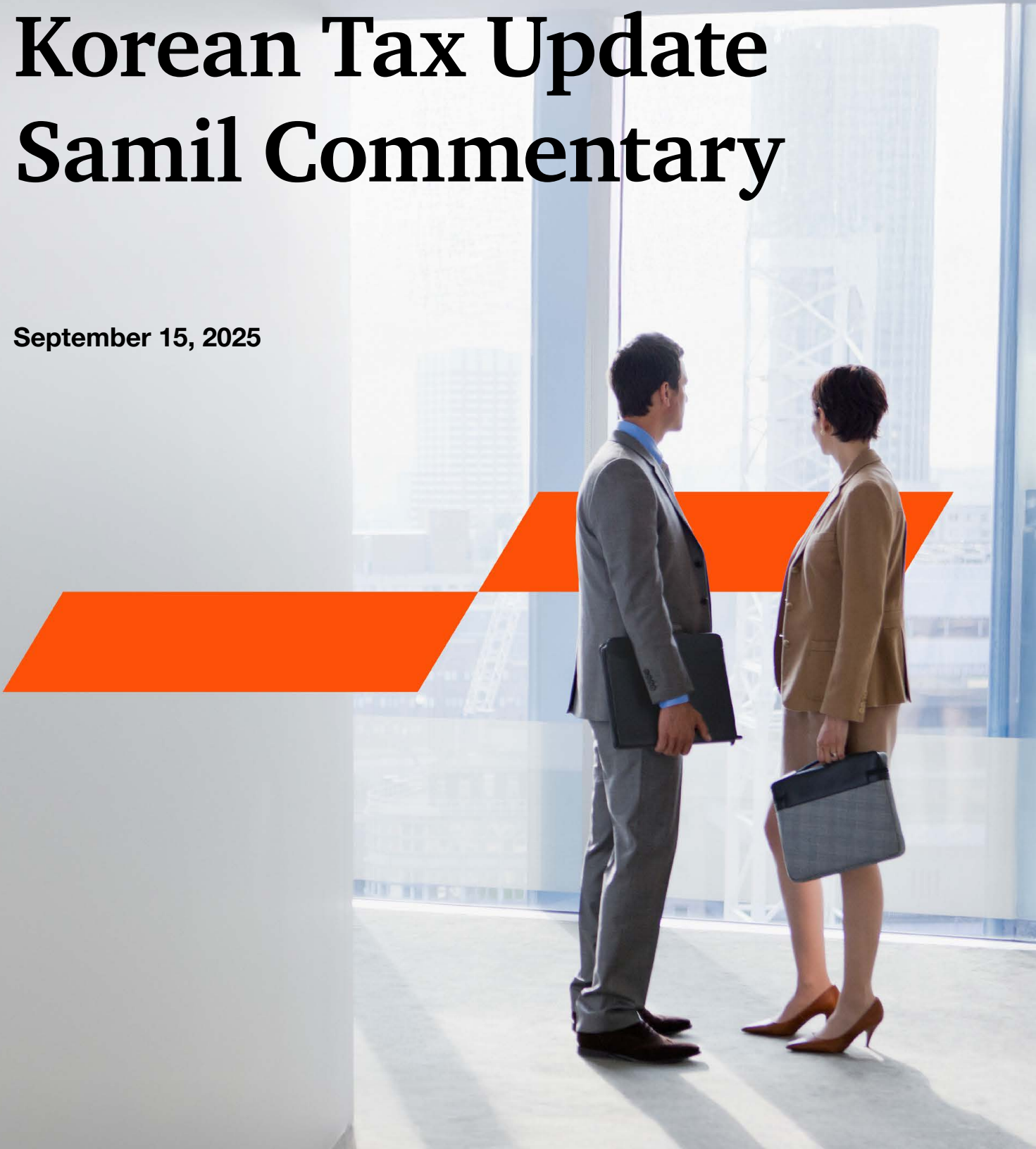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01 Tax New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21호, 2025. 8. 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22호, 2025. 8. 29.)	
03 최신 예규·판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건설용 토지의 증부세 합산배제 특례 적용 시 취득일 판단• 일반세율을 적용한 중과배제 주택의 증과세 전환 시 신고납부의무 및 가산세 과세 여부• 중소기업 유예 중인 모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01

Tax News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을 위해 실용적인 세제지원'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국가 균형발전', '민생경제 안정',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이번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장기 관행적 감면에 대한 감면을 조정 등의 증가요인과 인구감소지역 및 출산·양육지원 감면 확대 등의 감소요인에 따라 약 1,003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 포기·채납 등의 경우 상속인 수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조사 15일 전 → 20일 전(심판청구 등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시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20일간 → 20일간(납세자 동의 있는 경우 20일 이내))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마련(행안부장관이 지자체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 ·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권한 추가(지방세심의위 과적 및 이의신청 참여 및 의견 제출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특례의 정의 규정을 단순 열거규정으로 명확화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신설 · 담보신탁 시 부동산 실소유자인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적용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감면 연장(2025년 말 → 2026년 말) 및 개인 구입자 감면 신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2025년 말 → 2028년 말)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감면한도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2025년 말 → 2028년 말) 및 상시 거주요건 제외 등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감면 확대·국가전략기술15% 추가 감면 및 일몰 연장(2025년 말 → 2028년 말) · 신축에 대한 감면 후 추징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 개시 시점 완화(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 2년 이내) · 벤처기업육성지구 벤처기업·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의 수도권·비수도권 감면 차등 적용 등 · 물류단지 등 부동산의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감면 차등 및 일몰 연장(2025년 말 → 2028년 말)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 재산세 감면기간 신설(최대 8년 = 5년간 50% + 3년간 25% 감면(조례)) 등 · 인구감소지역 창업 등 감면 적용 시 창업의 범위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법인전환 등 제외 명확화 등 · 빈집 철거 후 토지의 재산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신설 · 산업단지 등 부동산의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감면 차등 및 일몰 연장 (2025년 말 → 2028년 말) · 사권 제한토지 등 감면 정비(국토계획법 외의 타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시 감면 적용 등)

구분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지역주민 고용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세율 1.4% ~ 3.5%) 과세특례 신설 • 리츠·부동산펀드·PFV의 대도시 중과 배제특례 적용 후 2년 이내 특례대상 제외 시 추징규정 신설
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배제 •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으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표로 시가표준액 적용 • 법인의 지목변경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세 과표로 시가표준액 적용 • 회원제 골프장 승계 취득에 대해서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 •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신고 후 요건 미충족 시 60일 이내 가산세 없이 중과세액 신고·납부 • 납세자가 시가인정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에 납부지연 가산세 포함 •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10년·6년)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및 주택 수 제외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및 주택 수 제외(~2027년 말) • 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기간 1년 연장(2025년 말 → 2026년 말) • 출산 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차감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0.1%p 상향 조정(0.9% ~ 2.4% → 1.0% ~ 2.5%)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조합원의 금전매수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조합)로 변경 •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 시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재산 포함 •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등 사용토지의 재산세 세부담 완화기간 확대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2025. 7. 31.)」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025. 8. 14.)」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조특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확대(인공지능 5개 신설 및 미래형 운송수단 2개 신설·2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방위산업 분야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신설 등)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 마련(관리 대상·관리기간·관리기준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9억 원 이하)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류 명확화(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 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이연퇴직소득자 중 2025년 이전 방식으로 환급 발생시만 2026년 이후 방식 적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종과 배제 기간 연장(~2025년 12월 31일 취득 → 2026년 12월 31일 취득) 협의매수·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 신설(양도일 →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
법인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인건비 한도(임직원별 연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적용 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 CR리츠가 2025년에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분 한정)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종부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종부세 종과 배제 기간 연장(~2025년 12월 31일 취득 → 2026년 12월 31일 취득)
부가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국조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 각 사업연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공포된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그 시행일인 9월 1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정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었음.

※ 중소기업 범위 상향 업종: 44개 중 16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 1차 금속 제조업	C24	평균매출액 등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1,500억 원 이하 → 1,800억 원 이하
7. 식료품 제조업	C10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 등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억 원 이하 → 1,200억 원 이하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6.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 등
27. 정보통신업	J	800억 원 이하 → 1,000억 원 이하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 800억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 상향 업종: 43개 중 12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 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 원 이하 → 140억 원 이하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 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80억 원 이하 → 100억 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 60억 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 등
35.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 4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 (S94 제외)	

0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21호, 2025. 8. 29.)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 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22호, 2025. 8. 29.)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03

최신 예규·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 적용 시 취득일 판단

(대법2023두50516, 2025. 7. 16.)

쟁점사항

조특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되(조특법 §104의 19 ①),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법 §104의 19 ②),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되는 토지 취득일이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인지 여부임.

판결요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종부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지급일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도 추후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잔금지급일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전까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을 실질적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토지가 그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해제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판정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통상적인 토지 취득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현행 조특법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산배제한 종부세의 추징을 배제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종부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2018두47929, 2018. 10. 12.),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해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추징을 면제하도록 사후관리의 예외사유를 신설할 예정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2025년 세제개편안, 2025. 7. 31.).

일반세율을 적용한 중과배제 주택의 중과세 전환 시 신고납부의무 및 가산세 과세 여부

(부동산세제과-1581, 2025. 6. 5.)

쟁점사항

지방세법에서는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 등의 중과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중과배제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지법 §13의 2 ①, 지령 §28의 2 및 §28의 5),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일반세율을 적용한 중과배제 주택이 이러한 중과배제 요건을 미충족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현행 지방세법의 신고납부기한 규정(지법 §20 ③, 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0일 내에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을 신고·납부하는지 여부와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규정에서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을 서로 구별된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지특법 §2 ① 6호), 일반세율을 적용한 중과배제 주택이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당초 적용할 세율을 낮게 신고한 것일 뿐 취득세의 '경감'이 아니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보통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법 §21 ①) 등을 고려할 때, 보통징수 전이라면 납세자는 당초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임.

시사점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한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산세 없이 추가납부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보통징수 전까지는 당초의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징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해당 추징세액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법이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주택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못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추징하는 것은 조세 행정상의 부담이 크고, 당초 취득시점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주택이 사후적인 사유로 인해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 전환으로 인한 취득세 차액을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납부하도록 추징절차 등을 보완할 예정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행정안전부, 2025. 8. 29.).

중소기업 유예 중인 모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5-법인-0961, 2025. 5. 29.)

쟁점사항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자산총액 요건·업종별 매출액 요건·관계기업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6년(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8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조특령 §2 ②),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모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100% 출자를 통해 자법인을 설립하고, 그 자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독립성 요건(중기령 §3 ① 2호 다목)을 미충족한 경우, 자법인이 그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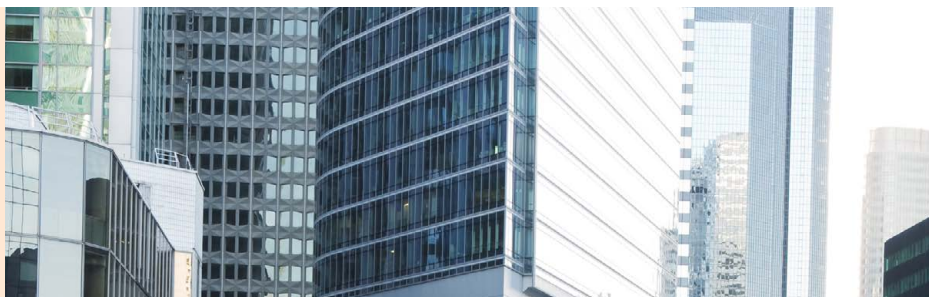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자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서면-2023-법인-0150, 2023. 5. 8.),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자법인은 중소기업에서 비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의 적용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이해됨.

시사점

중소기업 요건 중 관계기업 독립성 요건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률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모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모회사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해서도 모회사와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중소기업' 즉,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이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한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재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태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조영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민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신예지 Senior-Manager
yeji.shin@pwc.com
02-709-0659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